
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1항 본문 중 “6개월”을 “12개월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어느 하나에”를 “어느 하나의 시기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(이하 “디자인등록여부결정”이라 한다)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.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취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8조제4항제1호 중 “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(이하 “디자인등록여부결정”이라 한다)의”를 “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”로 한다.

제51조제4항 중 “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출원연월일을 적은 서면 및 도면의 등본을”을 “제1호의 서류 또는 제2호의 서면을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2호의 서면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만

해당한다.

1.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디자인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및 도면의 등본
2.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

제221조제1항 중 “1천만원”을 “5천만원”으로 한다.

제222조 중 “2천만원”을 “3천만원”으로 한다.

제223조 중 “2천만원”을 “3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제36조, 제48조제4항 및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.